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나57960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항소인 D 주식회사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27. 선고 2008가합4587 판결
변 론 종 결 2008. 9. 16.
판 결 선 고 2008. 10.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42,857,41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2, 3,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03. 9. 3. 생명보험사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 ① 상품명 : 무배당 D변액종신보험 표준채
- ② 주피보험자 : E
- ③ 보험수익자 : 만기/생존시 원고 A, 입원/상해시 E, 사망시 법정상속인
- ④ 보험료 : 월납 320,500원
- ⑤ 보험기간 : 주계약은 종신, 특약 부가내용은 80세까지
- ⑥ 보장내용 및 보험금 : 주계약 100,000,000원, 재해사망 50,000,000원, 재해보장 100,000,000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인 무배당 D변액종신보험 보통보험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한다)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계약에 부가된 D재해사망특약 약관(이하 '재해사망약관'이라 한다)에서는, 위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위 재해사망약관 별표 4 재해분류표에 기재된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가 발생하고, 그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계약에 부가된 D재해보장특약 약관(이하 '재해보장약관'이라 한다)에서는, 위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보장약관 별표 4에 기재된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해사망약관 제17조와 재해보장약관 제16조에서는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별지 1, 2, 3 기재와 같다.

다. 한편, 망 E는 2007. 10. 11. 서울 성북구 F아파트 105동 707호 자택에서 스스로 지면으로 뛰어내려 사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가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E의 자살로 인한 사고라 할지라도 이 사건 재해사망약관 제17조, 재해보장약관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보통약관 제19조 단서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통약관 제19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계약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사망원인을 재해사고로 한정하고 있는 재해사망약관, 재해보장약관에는 준용될 여지가 없고, 피보험자의 자살행위로 초래된 이 사건 사고는 우연성과 외래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각 특약 약관의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로서는 위 각 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보험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확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약관이 작성자인 기업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고 고객에게 그 약관 내용에 관한 교섭이나 검토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아니하는 형성의 과정에 비추어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는 소위 '불명료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207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사망약관과 재해보장약관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 등의 지급,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채, 재해사망약관 제17조와 재해



보장약관 제16조에서 위 각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특약은 이 사건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일반사망 중에서 특별히 재해사망의 경우에만 가중하여 보상하는 취지에서 부가된 것이기는 하나, 위 각 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전혀 상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닌 한, 위 각 특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위 각 특약의 준용 규정에서 정한 바대로 주계약 약관이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재해사망약관 제17조와 재해보장약관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이 사건 보통약관 제19조는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애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약관은 위 면책사유의 예외로서 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또는 ②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설사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위 ②의 면책예외사유에서는 보험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는 설사 피보험자가 명백히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개시일부터 근접한 일정한 기간 내에는 보험금 수취 목적의 자살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뒤에는 그러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기준시를 2년으로 정하고 2년 경과 후에는 자살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또한 우연성이 반드시 모든 종류의 보험에서 요구되는 보험사고의 개념요소는 아니며, 자살 그 자체가 범죄가 아닌 이상 보험사기를 방지할 정도의 기간을 경과한 후의 자살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한다고 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약관 조항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제19조 제1항 제1호가 재해사망특약 또는 재해보장특약 소정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보험자의 면책사유만을 규정한 취지로 이해한다면,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사망특약 또는 재해보장특약 고유의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제19조 제1항 제1호가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주계약 또는 재해사망특약, 재해보장특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위 제1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치거나 계약의 책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 또는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이해할 여지도 충분하며, 여기에 원래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에 대하여는 위 제19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앞서 본 상법 조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게 되어 있어서 위 제19조 제1항 제1호 중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면책사유를 규정한 본문 부분이 아니라 부책사유를 정한 단서 부분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러한 해석론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또한 앞서 본 약관 해석에 있어서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더군다나, 책임개시일 2년이 경과하기 이전의 자살, 자해행위 경우의 계약해지를 위하여도 위 제19조가 준용되어야 할 필요성까지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위 단서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재해사망보험금, 재해보장보험금의 지급사유인 보험사



고(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위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바(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중으로서 보험계약 체결일 내지는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일어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재해사망약관 제17조, 재해보장약관 제16조, 보통약관 제1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재해사망보험금 50,000,000원, 재해보장보험금 100,000,000원을 망 E의 법정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A에게 64,285,714원(= 150,000,000원 $\times$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에게 각 42,857,142원(= 150,000,000원 $\times$ 2/7)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경 _____

 판사 김유진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2-26

판사 김현석 _____



별지 1

보통약관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사망보험금 : 기본보험금액 및 변동보험금액의 100% 지급. 끝.



별지 2

재해사망약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하는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가 발생하고 그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그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장애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제17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약관의 준용)】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

사망보험금 : 평일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10,000,000원 지급(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0,000원). 끝.

【별표4(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DC :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류항목 13항 : 추락. 끝.



별지 3

재해보장약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별표 3 참조)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사망보험금 지급

【제16조(주계약 및 단체취급특약 약관의 준용)】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가 발생하고 그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그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0,000원(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0,000원). 끝.